

## 1. 개정이유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에 대해서도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공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932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안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3조의2, 제6조 및 제6조의2 등)

- 1)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비함
- 2)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신설함
- 3) 아이돌봄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정비함
- 4) 아이돌봄사의 건강진단 실시 결과 제출처를 정비함

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안 제2조의2, 제6조의3,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5조의3 등)

- 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하려는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

우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비함

2)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기준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등을 신설함

3)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휴업 및 폐업 등을 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신설함

4)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내용에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포함함

다. 그 밖의 정비사항

1)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서에 관한 서식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기준을 신설함(안 제7조)

2) 그 밖에 법률상 정의 수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수정하는 등 정비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아이돌보미의 직무 등)”을 “(아이돌봄사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제1호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본인이 활동하려는 법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의 장 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은 광역지원센터의 장 또

는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광역지원센터 지정서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증 사본
2.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범죄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 및 회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범죄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해당 광역지원센터의 장 또는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활동하려는 광역지원센터의 지정서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증 사본

⑧ 제7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요청서를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의 제목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을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1항제1호”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등 아이돌보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이돌봄사”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영 제2조제1호의 자격은 제외한다)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2호의 자격은 제외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3호의 자격은 제외한다)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5. 그 밖에 아이돌봄사의 자질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전의 제2항) 제1호 및 제7호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3항”으로, “아  
이돌보미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을 “아이돌봄사의 교육 과정·내용,”  
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  
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  
의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  
부하여 영 제2조의2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  
된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진(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반명함  
판) 1장
2.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수료증 1부(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

4.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부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증(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진(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반명함판) 1장

2.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제1호 각 목의 서류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성명이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

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진흥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증 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제4조제1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전단 중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아이돌봄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아이돌봄사로 활동 중인 사람(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이돌보미”를 “광역지원센터 또는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봄사”로, “법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해당 광역지원센터의 장 또는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2제2항”을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할”을 “끼칠”로 한다.

제6조의3제5항제1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아이돌봄서비스”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만족도”를 “만족도(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6조의4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아이돌봄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배치하는 아이돌봄사로 한정한다) 관리 및 아이돌봄서비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로 한정한다) 운영에 관한 계획서

제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사항이란 제6조의4제4항에 따라 지정된 광역지원센터 외의 광역지원센터가”를 “변경 사항이란”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비스기관으로”를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3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으로, “서비스기관 지정기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으로, “서비스기관으로”를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서비스기관을”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를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1항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약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민원과 아이돌봄사의 고충 등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운영할 것

3. 아이돌봄사 활동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 실적보고서를 성평등가족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  
준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제8조의 제목 “(서비스기관의 변경사항 등)”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  
공기관의 변경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서비스기관”  
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등) ① 등록 아이돌봄서  
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  
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가  
없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명
2. 소재지
3. 기관장

⑤ 제4항에 따른 중요 사항을 변경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사본과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약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민원과 아이돌봄사 등의 고충 등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운영할 것
3. 법 제6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마친 아이돌봄사 등의 인원, 아

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

4.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5. 그 밖에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⑦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실손해액(實損害額)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으로 인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4.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제1호

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제8조의3(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의3에 따라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휴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신고서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가 없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가 수리된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기간 연장 신고서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업 신고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한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업무재개 신고서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휴업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폐업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을 첨부

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서비스기관”을 각각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서비스기관”을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한다.

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취소·등록 취소 이력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조 제4항 중 “서비스기관”을 각각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안내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서비스기관 이행사항)”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행사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지정 취소 등)”을 “(지정·등록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및 제4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법 제17조제1항”을 각각 “법 제1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서비스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1. 시정명령의 사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간

⑥ 법 17조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의 2와 같다.

제13조의 제목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평가)”를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비스기관 평가”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평가”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이돌보미에”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로, “만족도 조사(이하 “아이돌보미 만족도”를 “만족도(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다) 조사(이하 “만족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제3조제4항”을 “만족도 조사를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아이돌보미 만족도”를 각각 “만족도”로 한다.

### 1. 진흥원

### 2. 가족복지 또는 아동복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제13조의3제1항 중 “별표 4의2와”를 “별표 4의3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4의3”을 “별표 4의4”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제2호 중 “아이돌보미의 특성 및”을 “아이돌봄사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제16조의 제목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운영”으로, “2014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3년마다(매 3년)”을 “5년마다(매 5년)”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서비스기관 지정취소”를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호 1)의 시

설기준란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며, 같은 란 1) 및 같은 표 제2호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호 마.자격 기준란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며, 같은 란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바목(종전의 마목)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란 사목(종전의 바목)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취득 이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2 제1호가목 단서 중 “업무정지”를 “사업정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 제2항제3호 | 지정취소 |  |  |
|-------------------------------------|--------------|------|--|--|

별표 2의2 제1호의 가.의 자격 및 배치 기준란 가목 중 “「건강가정기본법」”을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사, 「건강가정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의 자격 및 배치 기준란 나목 중 “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을 “아이돌봄사 양성·보수교육”으로 하며, 같은 란 다목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별표 2의3 제1호의 가.의 자격 및 배치 기준란 가목 중 “「건강가정기본법」”을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사, 「건강가정기본

법」”으로 하고, 같은 호 가.의 자격 및 배치 기준란 가목 중 “아이돌보미 근로계약”을 “아이돌봄사 근로계약”으로, “아이돌보미 채용·급여·보험관리”를 “아이돌봄사 채용·급여·보험관리”로 하며, 같은 란 나목 중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 조정, 지역”을 “지역”으로, “아이돌보미 운영”을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으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서비스제공기관의”를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로, “서비스제공기관을”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시설의 시설 및 장비 기준란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 (제7조제1항 관련)”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제7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서비스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같은 호 중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1)의 시설기준란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용 가정 및 아이돌보미의”를 “아이돌봄사의 상담 및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용 등과 관련된”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중 “서비스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1)의 자격 및 운영 기준란 중 “건강가정사”를 “아이돌봄사, 건강가정사”로 하며, 같은 란 2) 중 “서비스기관의 장이거나, 서비스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거나,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아이돌봄사 | 법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의 자격을 갖춘 사람 |
|-------|-----------------------------|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을 각각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로 하고,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준 (제16조 관련)”을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준 (제16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 (제8조의2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다음의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구 분  | 시설기준                                                                                                                                                                                                                                        |
|------|---------------------------------------------------------------------------------------------------------------------------------------------------------------------------------------------------------------------------------------------|
| 기본시설 | <p>가. 사무실</p> <p>1)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출 것</p> <p>2)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비품을 갖출 것</p> <p>나. 상담실</p> <p>사무실이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상담 및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용 등과 관련된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다만, 유·무선전화 등 별도의 수단을 통하여 상담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

2. 인력기준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구분       | 인력기준                                                                                                                                                                                                                          |
|----------|-------------------------------------------------------------------------------------------------------------------------------------------------------------------------------------------------------------------------------|
| 기관장      |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총괄하는 사람 1명                                                                                                                                                                                                    |
| 그 밖의 종사자 | <p>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과 상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담당인력</p> <p>가. 아이돌봄사 등의 결격사유 여부, 건강진단 결과 확인 등 아이돌봄사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p> <p>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민원 및 아이돌봄사 등의 고충 처리,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와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p> |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재지정·재등록 제한 기간**(제12조제5항 관련)

| 위반행위                                                               | 근거<br>법조문     | 재지정·<br>재등록<br>제한기간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한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1호 | 2년                  |
| 2. 삭제                                                              |               |                     |
| 3.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3호 | 1년                  |
| 4. 법 제2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4호 | 6개월                 |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5호 | 1년                  |
| 6. 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6호 | 6개월                 |
| 7.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 또는 등록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7호 | 1년                  |
| 8.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8호 | 1년                  |
| 9. 그 밖에 정상적인 아이돌봄 서비스의 제공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9호 | 6개월                 |

## 지정·등록 취소의 세부 기준 (제12조제6항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br>법조문     | 행정처분의 기준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1호 | 지정·등록취소  | 지정취소    |
| 2. 삭제                                                              |               |          |         |
| 3.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 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3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4. 법 제2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4호 | 시정명령     | 지정·등록취소 |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5호 | 지정취소     | 지정·등록취소 |
| 6. 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6호 | 시정명령     |         |

|                                                    |               |           |           |
|----------------------------------------------------|---------------|-----------|-----------|
| 7.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 또는 등록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7호 | 시정명령      | 지정 · 등록취소 |
| 8.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8호 | 지정 · 등록취소 |           |
| 9. 그 밖에 정상적인 아이돌봄 서비스의 제공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 제17조 제2항제9호 | 시정명령      |           |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개월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 법인·단체명                        |      |     |
|       | 주소<br>(전화번호: )                |      |     |
| 센터 개요 | 명칭                            |      |     |
|       | 소재지<br>(전화번호: )               |      |     |
|       | 센터장의 성명                       | 생년월일 |     |
|       | 운영 예정 연월일                     |      |     |
| 업무 인력 | 아이돌봄사 채용 및 복무관리 담당            | 명    |     |
|       | 아이돌봄사 수급 및 운영관리 담당            | 명    |     |
|       |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원 및 서비스 홍보 담당 | 명    |     |
|       | 조직·예산·회계 등 관리 담당              | 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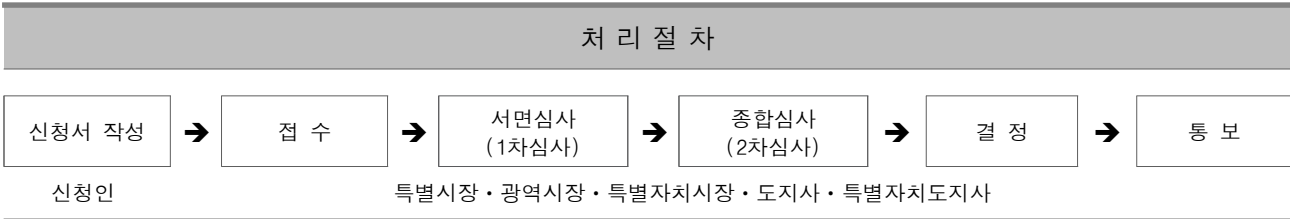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아이돌봄사 관리 및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계획서<br>2. 별표 2의3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br><br>없 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                         |      |    |  |
|-----|-------------------------|------|----|--|
| 대상자 | 성 명                     | (한글) |    |  |
|     |                         | (영문) |    |  |
|     | 주민등록번호<br>또는<br>외국인등록번호 |      | 국적 |  |
|     | 주 소                     |      |    |  |
|     | 연락처<br>(휴대전화번호)         |      |    |  |

본인은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또는 귀 기관에서 아이돌봄사·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으로서,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_\_\_\_\_광역지원센터·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함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br>14일              |
| 요청인<br>(기관장) | 기관명    | 등록번호(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경우) |
|              | 기관장 성명 | 전화번호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우리 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기관장)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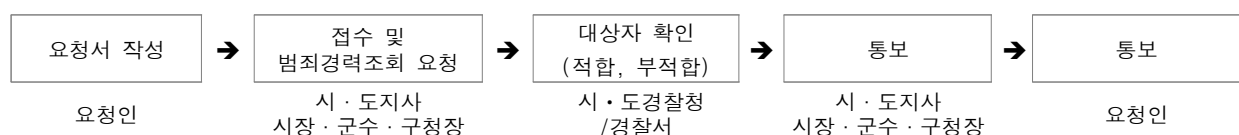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광역지원센터 지정서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증 사본 1부<br>2.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 수수료<br>없 음 |
|------|-------------------------------------------------------------------------------------------|------------|

### 작 성 방 법

1.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영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모두 적습니다.
2. 대상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합니다.

### 처 리 절 차



[illegible]

## 일괄범죄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서

[illegible]

## 범죄경력조회 회신요청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요청인<br>(대상자) | 성명(외국인은 영문으로 작성)      |                          |     |
|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
| 기관<br>정보     | 기관명                   | 등록번호(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경우) |     |
|              | 기관장 성명                | 전화번호                     |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7항에 따라 본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br>2. 광역지원센터 지정서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증 사본 1부 | 수수료<br>없 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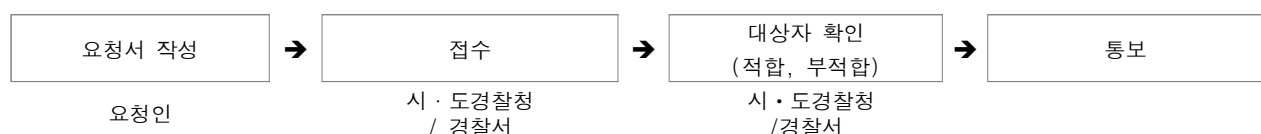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 리 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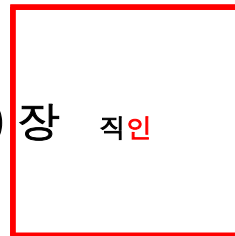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                                  |                                                                                                                  |
|----------------|----------------------------------|------------------------------------------------------------------------------------------------------------------|
| 요청인<br>(대상자)   | 성 명<br>(외국인은 영문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또는<br>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 근무 또는<br>활동 기관 | 기관명                              |                                                                                                                  |
|                | 기관장 성명                           |                                                                                                                  |
|                | 등록번호<br>(등록 아이돌봄서비스<br>제공기관의 경우) |                                                                                                                  |
| 결격사유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    ] 있음</span> <span>[    ] 없음</span> </div>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_\_\_\_\_경찰청(경찰서)장 직인



###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아이돌봄사 자격증 [ ] 발급 [ ]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발 급 30일<br>재발급 14일 |
|------|---------------|-----------------------|--------------------|
| 신청인  | 성명(외국인은 영문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사진(3cm×4cm)        |
|      | 주소            |                       |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                  |                    |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 시에만 작성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                       |                                                     |                                                                                                                                                                                                                                                                  |           |
|-----------------------|-----------------------------------------------------|------------------------------------------------------------------------------------------------------------------------------------------------------------------------------------------------------------------------------------------------------------------|-----------|
| 첨부서류                  | 발급<br>신청 시                                          | 1. 공통 제출서류<br>가. 사진(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반명함판) 1장<br>나.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수료증 1부. 다만,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br>다.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br>2.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성교육 면제자: 해당 자격을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br>없음 |
|                       | 재발급<br>신청 시                                         | 1.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된 경우<br>가. 자격증(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br>나. 사진(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반명함판) 1장<br>2.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br>가. 제1호 각 목의 서류<br>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성명이 바뀐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한국건강<br>가정진흥원<br>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자격 검정



발급 결정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 호

## 아이돌봄사 자격증

성 명 :

생년월일 :

사 진  
3cm × 4cm

위 사람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직인

##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성명(기관장)   | 전화번호          |      |
| 기관 정보 | 사업기관명     | 전화번호          |      |
|       | 주소        | 팩스번호          |      |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       | 성명(전담관리자) |               |      |
| 계좌 정보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_\_\_\_\_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br>2. 별표 3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br>없음 |
|------|----------------------------------------------|-----------|

### 처리절차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및 확인 | → | 검토 및 결재 | → | 지정서 작성 | → | 발급 |
|--------|---|---------|---|---------|---|--------|---|----|

신청인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아이돌봄 지원사업 담당 부서)

제 호

##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소 재 지:
3. 법 인 명:
4. 기 관 장:
5. 지정기간: . . . ~ . . .

위 기관을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_\_\_\_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변경사항

[illegible]

##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br>(기관장)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              | 기관명      |               |     |
|              | 기관 소재지   |               |     |
|              | 전화번호     | 이메일주소         |     |
|              | 사무실 전용면적 |               |     |

| 인적<br>사항 |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담당업무 등 |
|----------|-------------|-----|------|--------|
|          | 기관장         |     |      |        |
|          | 그 밖의<br>종사자 |     |      |        |
|          |             |     |      |        |
|          |             |     |      |        |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장)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신청인<br>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br>2. 정관 사본 1부(법인인 경우 해당합니다)<br>3.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br>4. 기관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
| 담당 공무원<br>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br>2. 사업자등록증명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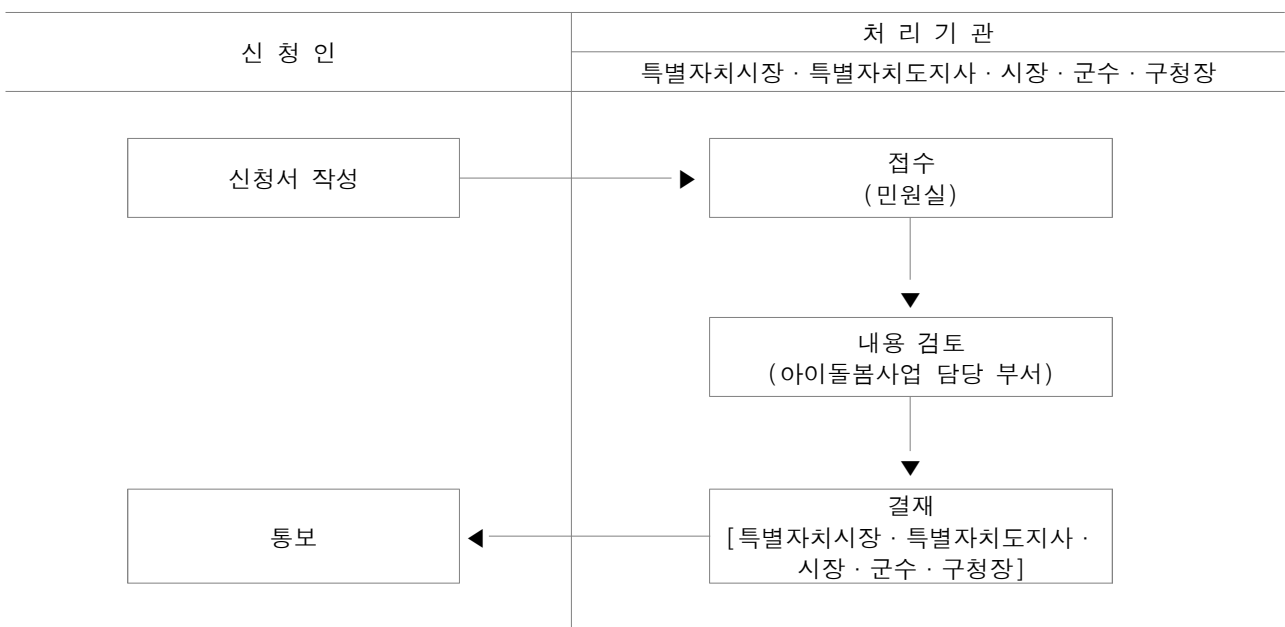
신청인(기관장)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인적사항 란에는 기관장과 그 밖의 종사자를 빠짐없이 적어야 하며,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제 호

##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증

1. 기 관 명:
2. 소 재 지:
3. 기 관 장:
4. 사업자등록번호:

위 기관이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_\_\_\_\_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변경사항

[illegible]

##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변경등록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5일 |
| 신청인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      | 기관명   | 기관장 성명        |     |
|      | 기관소재지 |               |     |
|      | 전화번호  | 이메일주소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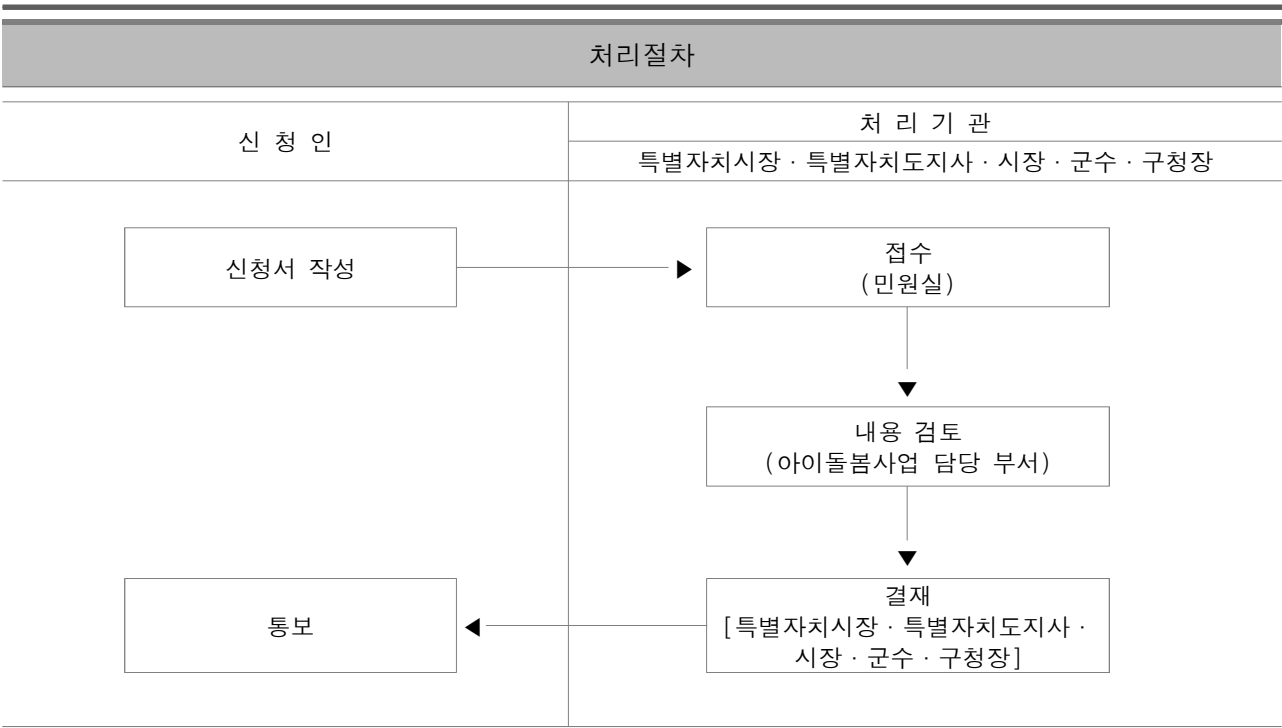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_\_\_\_\_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1. 등록증 사본(등록증 원본은 나중에 변경된 새 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제출합니다) 1부<br>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br>가. 기관명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br>나. 소재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br>다. 기관장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 휴업

[ ] 휴업기간 연장

[ ] 업무재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신고인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      | 기관명         | 기관장 성명        |         |
|      | 기관 소재지      |               |         |
| 등록번호 |             | 등록 연월일        |         |
| 신고내용 | [ ] 휴업      | 휴업기간          | ~ ( 일간) |
|      | [ ] 휴업기간 연장 | 연장 휴업기간       | ~ ( 일간) |
|      | [ ] 업무재개    | 업무재개일         |         |
|      | 사유          |               |         |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 ]휴업 [ ]휴업기간 연장 [ ]업무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                                  |
|----------------|----------------------------------|
| 신고인<br>제출서류    | 등록증 사본 1부                        |
| 담당 공무원<br>확인사항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폐업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일 |
| 신고인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           | 기관명    | 기관장 성명        |    |
|           | 기관 소재지 |               |    |
| 등록번호      |        | 등록<br>연월일     |    |
| 폐업<br>연월일 |        |               |    |
| 폐업사유      |        |               |    |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_\_\_\_\_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신고인<br>제출서류    | 등록증 원본 1부                       |
| 담당 공무원<br>확인사항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2조(아이돌보미의 직무 등) ①<br>(생략)<br>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u>아이돌보미</u> 의 주의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 4. (생략)<br><u>&lt;신설&gt;</u> | 제2조(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①<br>(현행과 같음)<br>② ----- <u>아이돌봄사</u> -----<br>-----.<br>1. ~ 4. (현행과 같음)<br>제2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u>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제1호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u><br>② <u>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본인이 활동하려는 법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의 장 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u> |

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은 광역지원센터의 장 또는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광역지원센터 지정서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증 사본

2.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범죄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 및 회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14

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범죄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  
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해당 광역지원센터의  
장 또는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  
공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  
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제출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요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  
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  
료

2. 활동하려는 광역지원센터의

제3조(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 다만,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등 아이돌보미의 자질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료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지정서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증 사본

⑧ 제7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회신요청서를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7조제1항 제1호-----  
----- 아이돌봄사-----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이돌봄사-- 인정하는 -----  
-----  
-----  
-----.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영 제2조 제1호의 자격은 제외한다)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2호의 자격은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 윤리
2. ~ 6. (생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적성·인성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3.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 제3호의 자격은 제외한다)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5. 그 밖에 아이돌봄사의 자질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  
-----  
-----  
-----.

1. 아이돌봄사-----  
--

2. ~ 6. (현행과 같음)

7. -----  
-----  
-----  
----- 아이돌봄사 -----  
-----

② 법 제7조제1항-----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에 따른 적성·인성 검사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가족복지 또는 아동복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적성·인성 검사 업무 등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적성·인성 검사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적성·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삭 제>

④ ----- 제3항-----  
----- 아이돌봄사의 교육 과정·내용, -----  
-----  
-----  
-----.

제3조의2(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아이돌봄

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자격증 발급 ·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조의2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진(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반명함판) 1장
2.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수료증 1부(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
4.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부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격증

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증(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진(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반명합판) 1장

2.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제1호 각 목의 서류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성명이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

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진흥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                                                                                                                                                                                                                                                                                                                 |                                                                                                                                                                                                                                                                                                                                                                                                                    |
|-----------------------------------------------------------------------------------------------------------------------------------------------------------------------------------------------------------------------------------------------------------------------------------------------------------------|--------------------------------------------------------------------------------------------------------------------------------------------------------------------------------------------------------------------------------------------------------------------------------------------------------------------------------------------------------------------------------------------------------------------|
| <p>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u>아이돌보미</u>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u>신청하여야</u> 한다.</p> <p>③ (생략)</p> <p>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p> | <p><u>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u></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u>아이돌봄사 자격증 서식</u>에 따라 발급한다.</p> <p>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br/>----- <u>아이돌봄사</u>-----<br/>-----<br/>-----.</p> <p>② -----<br/>-----<br/>-----<br/>-----<br/>-----<br/>-----<br/>-----<br/>-----<br/>-----<br/>-- <u>신청해야</u>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br/>-----</p> |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생략)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은 아이돌보미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교육) ① (생략)

<신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

-----  
----- 발급해야 -----  
--.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아이돌봄사 -----  
-----  
-- 제출해야 -----.

제6조(보수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아이돌봄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아이돌봄사로 활동 중인 사람(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  
-----  
-----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기관에는 보수교육의 일부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보수교육의 내용은 아이돌보미의 자질을 기르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항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 설>

제6조의2(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아이돌보미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아이돌보미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아이돌보미는 제1항에 따라

-----  
--.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④ ----- 아이돌봄사  
-----  
-----  
-----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의2(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① -----  
----- 아이돌봄사-----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아이돌봄사-----  
-----  
-----  
-----  
-----.

④ 광역지원센터 또는 등록 아

건강진단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법 제10조의4  
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  
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아이돌  
보미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  
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  
려가 있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1. 2. (생 략)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 정하여  
고시한 질병

제6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10조의3제2항제8호에  
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  
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말한다.

1. 아이돌보미 권익증진 프로그  
램 개발 및 보급

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  
동하는 아이돌봄사-----

----- 해당 광역지원  
센터의 장 또는 등록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⑤ ----- 아이돌  
봄사-----  
-----.

⑥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  
-----  
-----  
-----.

1. 2. (현행과 같음)

3. -----  
----- 끼칠  
-----  
-----

제6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1. 아이돌봄사 -----  
-----

|                                                                                                                                                                                           |                                                                                                                                                                                                               |
|-------------------------------------------------------------------------------------------------------------------------------------------------------------------------------------------|---------------------------------------------------------------------------------------------------------------------------------------------------------------------------------------------------------------|
| <p>2. (생략)</p> <p>3. <u>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적성·인성 검사 지원</u></p> <p>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및 <u>서비스기관</u>에 대한 평가 지원</p> <p>5.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u>아이돌봄서비스</u>에 대한 보호자의 <u>만족도</u> 조사 지원</p> | <p>2.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4. -----<br/>-----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p> <p>5. -----<br/><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br/>-- <u>만족도(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다)</u> -<br/>--</p> |
| <p>6. (생략)</p> <p>7.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민원처리, <u>아이돌보미</u> 근로계약·복무 등에 대한 자문 및 노무관리 표준지침 개발 등을 통한 광역지원센터 및 <u>서비스기관</u> 운영 지원</p>                                                                  | <p>6. (현행과 같음)</p> <p>7. -----<br/>-- <u>아이돌봄사</u> -----<br/>-----<br/>-----<br/>-----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br/>-----</p>                                                                                 |
| <p>제6조의4(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생략)</p> <p>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p>                                                                           | <p>제6조의4(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br/>-----<br/>-----<br/>-----</p>                                                                                                                      |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아이돌보미 관리 및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계획서

2. (생략)

③ (생략)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등을 광역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의5(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① 법 제10조의4제4항

-----  
-----  
--.

1. 아이돌봄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배치하는 아이돌봄사로 한정한다) 관리 및 아이돌봄서비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로 한정한다) 운영에 관한 계획서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조의5(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① -----

전단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이란 제6조의4제4항에 따라 지정된 광역지원센터 외의 광역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②·③ (생략)

제7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3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 변경 사항  
이란 -----  
-----  
-----

말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

기관의 지정 등)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  
-----.

② -----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  
--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정 아  
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

----- 신청해야 -----.

1. 사업계획서

2. 제1항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의 서비스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비스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신 설>

-----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신청-----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  
정 기준----- 지정 아이돌  
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  
-----.

④ -----  
-----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  
-----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

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  
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약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민원과 아이돌봄사의 고충 등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운영할 것
3. 아이돌봄사 활동 현황 등을

|                                                                                                                                |                                                                                        |
|--------------------------------------------------------------------------------------------------------------------------------|----------------------------------------------------------------------------------------|
|                                                                                                                                | <p><u>포함한 사업 실적보고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것</u></p>          |
|                                                                                                                                | <p><u>4. 그 밖에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준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u></p>          |
| 제8조(서비스기관의 변경사항 등)                                                                                                             | 제8조(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사항 등) ① -----                                                    |
| ①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 -----.                                                                                 |
| 1. <u>서비스기관의 이전</u>                                                                                                            | 1. <u>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                                                         |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
| ②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 ② -----<br>-----<br>-----<br>-----<br>-----<br>-----<br>----- <u>제출해야</u> -----<br>--. |
| ③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라                                                                                                             | ③ -----                                                                                |

제1항 외 그 밖의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밖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  
-----  
-----  
-----  
-----  
----- 제출해야 -----.

제8조의2(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등) ①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가 없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명

2. 소재지

3. 기관장

⑤ 제4항에 따른 중요 사항을 변경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사본과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약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민원과 아이돌봄사 등의 고충등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운영할 것
3. 법 제6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마친 아이돌봄사 등의 인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
4.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5. 그 밖에 등록 아이돌봄서비

스제공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⑦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실손해액(實損害額)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으로 인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4.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

<신 설>

산한 금액

5.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  
가 생긴 경우: 제2호 및 제3호  
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  
당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  
우: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제8조의3(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  
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  
고) ① 법 제11조의3에 따라 등  
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휴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  
식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  
기관 휴업 신고서에 등록증 사  
본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  
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  
군수가 없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가 수  
리된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

기관의 장은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휴업기간 연장 신고서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업 신고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한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업무재개 신고서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휴업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폐업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                                                                                                                                                                                                      |                                                                                                                                                                                                                                                                                                                                                                                                                                                                      |
|------------------------------------------------------------------------------------------------------------------------------------------------------------------------------------------------------|----------------------------------------------------------------------------------------------------------------------------------------------------------------------------------------------------------------------------------------------------------------------------------------------------------------------------------------------------------------------------------------------------------------------------------------------------------------------|
| <p>제9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p> <p>1. (생략)</p> <p>2. <u>서비스기관</u>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p> <p>가. <u>서비스기관</u>의 명칭, 소재</p> | <p><u>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p> <p>⑤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u></p> <p>제9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등) ① -----</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p> <p>-----</p> <p>가.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p> |
|------------------------------------------------------------------------------------------------------------------------------------------------------------------------------------------------------|----------------------------------------------------------------------------------------------------------------------------------------------------------------------------------------------------------------------------------------------------------------------------------------------------------------------------------------------------------------------------------------------------------------------------------------------------------------------|

|                                                                                                         |                                                                                         |
|---------------------------------------------------------------------------------------------------------|-----------------------------------------------------------------------------------------|
| 지 및 연락처                                                                                                 | -----                                                                                   |
| 나. <u>서비스기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u>                                                                             | 나.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br>-----                                                          |
| 다. <u>서비스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이력</u>                                                                            | 다. <u>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                                                          |
| 라. <u>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이력</u>                                                                                | 라.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취소·등록 취소 이력</u>                                                   |
| 마. <u>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u>                                                                 | <삭 제>                                                                                   |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u>서비스기관의 장은</u> 아이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u>아이돌보미</u>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② -----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br>----- <u>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u> -----<br>-----<br>----. |
| 1. <u>아이돌보미</u> 의 성명 및 연락처                                                                              | 1. <u>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u><br>-----<br>--                                                 |
| 2. <u>아이돌보미</u> 의 경력                                                                                    | 2. <u>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u><br>-----                                                       |
| 3. <u>아이돌보미</u> 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                                                                          | 3. <u>아이돌봄사</u> -----<br>-----                                                          |
|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u>아이돌보미</u> 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 4. ----- <u>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u> -----                                                    |

과

5.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비스기관의 정보 안내 또는 아이돌보미의 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1. 서비스기관의 정보 안내: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 라. (생 략)

2. 아이돌보미의 정보 제공: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 나. (생 략)

다. 그 밖에 아이의 보호자와 서비스기관의 장이 서로 합의한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기관의 정보 안내 또는 아이돌보미의 정보 제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

5. (현행과 같음)

③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  
-----  
-----.

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가. ~ 라. (현행과 같음)

2.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④ -----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  
-----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안내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

|                                 |                                          |
|---------------------------------|------------------------------------------|
|                                 | <u>각 호의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u>         |
| 제10조( <u>서비스기관 이행사항</u> ) (생략)  | 제10조(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행사항</u> ) (현행과 같음) |
| 제11조( <u>표준근로계약서 기재사항</u> )     | 제11조( <u>표준근로계약서 기재사항</u> )              |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 -----                                    |
| 기간 및 내용, 수당, <u>아이돌보미</u>       | ----- <u>아이돌봄사</u>                       |
| 계약 해지 등 아이돌봄서비스                 | -----                                    |
|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 -----                                    |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 -----.                                   |
| 제12조( <u>지정 취소 등</u> ) <신 설>    | 제12조( <u>지정 · 등록 취소 등</u> ) ①            |
|                                 | <u>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 · 도</u>                 |
|                                 | <u>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u>               |
|                                 | <u>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u>                 |
|                                 | <u>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사항</u>                  |
|                                 | <u>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u>                |
|                                 | <u>내의 시정기간을 주어야 한다.</u>                  |
|                                 | ② <u>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다</u>                 |
|                                 | <u>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u>                 |
|                                 | <u>로 해야 한다.</u>                          |
|                                 | 1. <u>시정명령의 사유</u>                       |
|                                 | 2. <u>시정명령의 내용</u>                       |
|                                 | 3. <u>시정기간</u>                           |
|                                 | ③ -----                                  |
|                                 | ----- <u>법 제17조제2항</u> -----             |
| <신 설>                           |                                          |
| ① <u>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 ·</u>        |                                          |
| <u>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u>        |                                          |

라 중앙지원센터 또는 광역지원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  
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취소  
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아이돌  
봄서비스의 변경에 대하여 안내  
해야 한다. 이 경우 아이돌봄서  
비스의 변경에 대한 안내는 특  
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성평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란 별표 4의 기간을 말한다.

<신 설>

제13조(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  
관의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  
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평  
가 대상기관, 평가 지표, 평가  
시기, 평가 결과 공개 방법 등이

-----  
-----  
-----  
-----.

④ -----  
----- 법 제17조제2항-----  
----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  
기관-----  
-----  
-----.  
-----  
-----  
-----  
-----.

⑤ 법 제17조제3항-----  
-----  
-----.

⑥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3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평가)  
① -----  
-----  
-----

포함된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  
기관 평가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광역지  
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평가를  
위하여 보육·아동·유아교육  
·가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의2(아이돌보미 만족도 조  
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에 대  
한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이하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조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모두 종  
료된 후에 실시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  
조의2제2항에 따라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신설>

----- 아이돌  
봄서비스제공기관 -----.

② -----  
----- 아이돌봄서비스제공  
기관 관리·평가-----  
-----  
-----.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  
관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 ①  
----- 아이돌봄서비스제  
공기관에 -- 만족도(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  
우미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  
다) 조사(이하 “만족도 -----  
-----). <후단 삭제>

1. ~ 3. (현행과 같음)

② -----  
----- 만족도 조사  
를 다음 -----  
-----  
-----.

1. 진흥원

2. 가족복지 또는 아동복지 사  
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의 절차·방법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이하 “공동육아나눔터”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생략)

제13조의4(육아도우미 신원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이하 “신원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건강진단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

③ -----  
----- 만족도 -----  
-----  
-----  
-----  
-----.

④ -----  
----- 만족도 -----  
-----  
-----  
-----  
-----.

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① -----  
-----  
-----  
----- 별표 4의3과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4(육아도우미 신원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 등) ① -----  
-----  
-----  
-----  
----- 사람은 -----  
-----  
-----

조회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장  
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략)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9  
조의2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별표 4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범죄경력조회 신  
청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  
식의 범죄경력조회 의뢰서를 수  
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사기  
관의 장으로부터 범죄경력조회  
회신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육아  
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5조(비용 지원 신청 등) ① (생  
략)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별표 4의4-----

④ -----  
-----  
-----  
-----  
-----  
-----  
-----  
-----.

사람-----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비용 지원 신청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제1항제1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15조의3(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아이돌보미의 특성 및 활동 실태
3. 서비스기관의 운영 현황 및

② -----  
-----  
-----  
-----  
-----  
-----  
-----  
-----  
-----  
-----  
----- 확인해야 -----.

해야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아이돌봄사의 -----  
--
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종사자 실태

4. 5. (생략)

② ~ ⑤ (생략)

제16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등

2. 3. 삭제

운영 현황

4.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준) ----- 아이돌봄사 -----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아이돌봄서비스제  
공기관의 지정·운영 -----  
-- 2026년 1월 1일-----  
5년마다(매 5년-----  
-----  
-----  
--- 해야 한다.

② -----  
-----  
-----  
-----  
-----  
----- 해  
야 -----.

1. ----- 아이돌봄사 ---  
-----

|                                           |                                                             |
|-------------------------------------------|-------------------------------------------------------------|
| 4. 제12조에 따른 <u>서비스기관</u><br><u>지정취소</u> 등 | 4. ----- <u>시정명령</u> 및<br><u>지정 또는 등록 취소</u> -----<br>----- |
|-------------------------------------------|-------------------------------------------------------------|